

저자 (Authors)	주보돈 Ju, Bo-don
출처 (Source)	목간과문자 16 , 2016.6, 41-62 (22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16 , 2016.6, 41-62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70901
APA Style	주보돈 (2016). 廣開土王碑와 長壽王. 목간과문자, 16, 41-6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廣開土王碑와 長壽王

주보돈*

- I. 문제의 제기
- II. 立碑의 시점
- III. 장수왕의 입장과 의지
- IV. 장수왕의 治績과 向方
- V. 마무리

〈국문초록〉

광개토왕비는 고구려 관련 문헌 사료가 그리 풍부하지 못한 실정에 견주어 거기에는 비교적 많은 분량의 정보가 함축되어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2012년 여름 뒷날 集安高句麗碑(이하 집안비로 약칭함)는 광개토왕비의 축소판이라 단정해도 무방할 정도로 비문의 구조나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집안비는 마모가 매우 심하며, 집안비를 보유한 중국 측이 비문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게 하여 연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광개토왕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생각된다. 광개토왕 비문의 문단 구조를 새롭게 이해해 보려 한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비문의 내용만으로 문단을 구분하려고 해 무조건 3단락으로 구성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처음부터 비문 작성자가 가진 원래의 의도는 전혀 배려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 연구상 근본적 한계를 지닌 접근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개토왕비문을 크게 2단락으로 구분한 새로운 견해는 방법상의 참신성에서 크게 주목해 볼 만한 대상이라 하겠다. 비문 전체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작성자의 입장을 무엇보다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함이 일차적인 관건이며, 가장 기본적 접근 방법이다. 그럼에도 기왕

* 경북대학교 사학과

에 그러하지를 못하였던 점은 이제라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 핵심어: 광개토왕비, 집안고구려비, 장수왕

I. 문제의 제기

돌이켜보면 한국고대사의 특정 분야 가운데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가장 깊은 관심을 끌어난 대상으로서 광개토왕비문을 손꼽아도 좋을 듯 싶다. 고구려 관련 문헌 사료가 그리 풍부하지 못한 실정에 견주어 거기에는 비교적 많은 분량의 정보가 함축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 동안 고구려사 연구가 광개토왕대에 집중되다시피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연구가 매우 많이 이루어진 만큼이나 적지 않은 부분이 또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됨으로써 풀리지 않은 채 지금껏 수수께끼로 남겨진 것 또한 상당하다. 아무리 집어넣고 싶은 내용이 풍부하더라도 공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작성 당초부터 어쩔 수 없이 극히 한정된 사항만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비문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점이 작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2012년 여름 어찌던 장차 광개토왕비 가운데 풀기 어려웠던 여러 숙제들을 말끔히 해결해줄지도 모를 새로운 비가 발견됨으로써 크게 관심을 끌었다. 뒷날 集安高句麗碑(이하 집안비로 약칭함)로 명명된 이 비는 그 존재가 알려지자마자 마치 광개토왕비와 관련한 논쟁을 일거에 불식시켜줄 듯이 잔뜩 기대되었다. 언뜻 보아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광개토왕비의 축소판이라 단정해도 무방할 정도로 두 비문의 구조나 내용은 매우 유사한 면모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안비는 마모가 매우 심한 편이며, 특히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유독 판독 곤란한 곳이 많아 애초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 동안 진행된 연구 성과를¹⁾ 일별하면 오히려 논란만을 더욱 가중시킨 측면도 없지가 않다. 집안비의 立碑 시점이 광개토왕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앞뒤 어느 쪽이냐를 비롯해 양자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등등 가장 기본적 문제조차 확연히 규명되지 못한 실정이다. 아직 원래의 상태에서 한결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진단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다. 현재 집비를 보유한 중국 측이 비문을 직접 조사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점도 연구의 진전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 장차 어떤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료로서의 활용은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실 집안비의 출현은 평소 광개토왕비문에 깊은 관심을 두어온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 자체를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게 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차라리 더 큰 의의가 찾아진다.

그러나 광개토왕비와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연구 성과가 나와 있는 까닭에 신진 연구자들이 나름의 참신한 견해를 내어놓기란 쉽지가 않다. 반면, 선행의 연구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내세웠던 기존 견해

1) 집안비를 둘러싼 동향에 대해서는 강진원,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판독과 연구 현황」, 『木簡과 文字』 11 참조.

를 굳게 지키려는 데에만 급급해 한 치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계속 그 주변 언저리에서만 맴도는 것이 현황이 아닌가 싶다.

사실 새로운 자료가 출현한다면 그로부터 어떤 정보를 읽어내기에 앞서 기왕의 입장을 반성적(혹은 修正的) 차원에서 냉정하게 되돌아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와 순서이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입장에서 접근한 사례는 과문의 탓인지 거의 접하지를 못하였다. 대부분 自說을 보강하는 입장에서만 新出 자료를 다룸이 일반적 경향으로 굳어져 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집안비의 연구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었다. 필자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와 비슷한 사례는 백제사와 신라사 분야에서도 찾아진다.²⁾ 그런 양상이 한국고대사 분야 전반에 걸쳐 마냥 되풀이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무척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런 정황 속에서 각별히 주목해볼 돋보이는 성과가 찾아진다. 광개토왕비문의 문단 구조를 새롭게 이해해 보려 한 시도이다.³⁾ 44행으로 이루어진 광개토왕비문의 전체를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보는 기왕의 통설과는 달리 새롭게 2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근거로서는 문단을 銘辭(其辭)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줄을 바꾸어 띄어 썼다는 점, 그 이후의 전부가 마치 한 묶음인 듯이 나타내기 위해 맨 마지막에 종결사 ‘之’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비문의 내용과 해석의 옳고 그름은 여하하든 문단을 것처럼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는 비문에 즉한 방법이어서 올바른 접근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얼핏 비문의 내용만으로 문단을 구분하려는 타성에 젖은 나머지 무조건 3단락으로 구성되었다고 단정함이 일반적 경향이였다. 처음부터 비문 작성자가 가진 원래의 의도는 전혀 배려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 연구상 근본적 한계를 지닌 접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광개토왕비문을 크게 2단락으로 구분한 새로운 견해는 방법상의 참신성에서 크게 주목해 볼 만한 대상이라 하겠다. 어찌면 새로운 집안비 출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온 커다란 성과의 하나로 손꼽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광개토왕비문 내에서는 撰者나 書者 등과 관련한 어떤 片鱗도 찾아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도 비문을 작성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된 어떤 사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문단 작성에 의도적으로 드러내려 하였을 법하다. 그것은 공간이 남아 있음에도 줄 바꾸기를 시도한 점, 비문의 마지막을 끝맺음하면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였지만 굳이 종결사인 之를 일부러 넣어서 마무리하려 한 점 등이 그와 같은 찬자의 어떤 의도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당시 비문 찬자의 그런 생각을 간파해 내었다는 점에서 2단락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비문을 2단락, 혹은 3단락으로 보느냐에 따라 비문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저절로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처럼 비문의 전체 맥락을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길을 텃다는 측면에서 2단락설은 충분히 음미해볼 주장이라 하겠다.

2) 朱甫暎, 2014, 「백제사 관련 신출토 자료의 음미」, 『한국 고대사 연구의 방법과 시각』(노태돈교수 정년기념논총), 사계절: 2010, 『浦項 中城里新羅碑에 대한 研究 展望』, 『韓國古代史研究』 59.

3) 余昊奎, 2014, 「廣開土王陵碑의 문장구성과 서사구조」, 『嶺南學』 25. 물론 띄어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은 이보다 앞서 해진 적이 있다(이성시, 2008, 「광개토대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韓國古代史研究』 50). 여효규는 이를 이어받아 여러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한 셈이었다.

이상과 같이 비문 전체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작성자의 입장을 무엇보다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함이 일차적인 관건이며, 가장 기본적 접근 방법이다. 그럼에도 기왕에 그러하지를 못하였던 점은 이제라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광개토왕비문의 구조를 막연한 선입견에 입각해 3단락이라고 당연시해 버림으로써 적지 않은 정보를 놓쳤거나 곡해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해 실제로 비문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았거나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그냥 스쳐버린 대목이 적지 않았음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몇몇 의심스런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다.

첫째, 광개토왕비가 건립된 시점의 문제이다. 그 동안 비의 건립 시점을 무조건 414년이라 단정하고서 이를 거의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관련 문장을 전후맥락이 당개 엄밀히 음미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난다. 이 점은 너무나도 안이하게 지나쳐 버리고 만 잘못으로 지적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광개토왕비 건립의 계기뿐만 아니라 415년에 만들어져 신라 왕도였던 경주 壺汙塚에서 출토된 호우의 명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둘째, 광개토왕비문에서 백제를 굳이 百殘이라 부른 사실에 대한 의문이다. 백잔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광개토왕의 할아버지 故國原王(331-371)이 백제 近肖古王(346-371)에 의해 피살된 뒤 그를 최대의 主敵으로 여긴 고구려가 복수하려는 감정을 강하게 移入시킨 蔑稱으로서 낮추어 부른 국명이라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비문에는 정작 396년 광개토왕이 5만의 병력을 동원, 親征해 漢江을 건너 그 왕도인 漢城을 함락시켰을 때 항복해온 阿莘王(392-405)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는 화의가 봄눈 녹듯 너무도 쉽게 성립되었다. 광개토왕 이전부터 백제를 백잔이라 불러 줄곧 강한 적개심을 보여 왔다면 이처럼 쉬운 화의의 성립은 실상과는 그리 잘 어울리지가 않아 이해하기 곤란한 대목이다. 長壽王(414-492)이 475년 한성을 공략해 蓋鹵王을 사로잡아 목을 벤 일대사건과 오히려 잘 들어맞는 표현이다. 이 점은 어쩌면 광개토왕비문을 새롭게 풀어갈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

셋째, 그와 관련하지만 기왕에 비문의 내용이 장수왕의 입장에서 쓰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비문을 작성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광개토왕이 아니라 장수왕이었다. 광개토왕은 비문의 서술 대상으로서 객체적 존재일 따름이었다. 따라서 광개토왕비문에는 당연하게도 장수왕의 입장이나 정책 방향이 강하게 스며들어 갔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읽어내어야만 올바른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겠다. 그럼에도 오로지 광개토왕의 입장만 염두에 둔 접근은 앞서 비문의 구조에 대해 작성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물론 기왕에 장수왕의 입장을 염두에 넣은 견해가 전혀 없지는 않았으며,⁴⁾ 심지어는 長壽王碑라고 부르자는 논자도⁵⁾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광개토왕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널리 일반화됨으로써 그 동안 장수왕의 입장이 별로 두드러지지 못하였음이 실상이었다. 장수왕대와 관련한 금석문 자료가 적지 않음에도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실은 그를

4) 金賢淑,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研究』 65.

5) 金台植, 2012, 「廣開土王碑, 父王의 運樞 앞에서 青年王이 보낸 경고」, 『韓國古代史探究』 10.

뚜렷이 입증해 주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광개토왕비문에 대해서는 엄청나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쏟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직껏 검토를 기다리는 빈 구석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는 쉽사리 선입견에 빠져버린 나머지 비문의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한 방법론에서 빚어진 결과라 여겨진다. 아래에서는 앞서 제시한 몇몇 문제를 다루면서 그런 측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 立碑의 시점

1. 기존 이해의 문제

광개토왕비의 입비 시점을 흔히 414년 9월 29일이라 간주하고 있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비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막연한 선입견에 따라 당연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져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관련 기사에 대해 약간만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들여다보았다면 그것이 잘못임은 단번에 드러났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를 점검해보기 위해 일단 비문으로부터 관련 기사를 적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①昊天不弔 卅有九宴駕棄國 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 ②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제1면 5행과 6행)

이 기사는 광개토왕이 사망한 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고서 비를 세우게 되는 모습을 간략하게 기술한 장면이다. 비문 전체를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을 때 첫째 단락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바로 앞까지는 고구려의 건국 신화 및 시조 鄒牟로부터 2대 瑠璃王(儒留王)을 거쳐 3대 大朱留王(大武神王)에 이르기까지의 대강을 비롯해 광개토왕의 즉위 및 당대의 外征과 內治 전반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바로 그에 뒤이어진 위의 기사는 광개토왕의 죽음과 그 이후의 처리 사항 일체를 지극히 압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다.

위의 기사는 일단 내용 및 문장 구조상 크게 ①과 ②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함이 적절하다. ①은 18세에 즉위하였던 광개토왕이 39세에 사망하였는데 갑인년, 즉 414년 9월 29일에 이르러서 (그 시신을) 山陵으로 옮긴 사실을 기록한 부분이다. ‘以’란 단어를 사용해 앞과 뒤 사실이 서로 인과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수법이다. ②의 경우도 그에 대비하면 역시 마찬가지로의 문장 작성법에 입각해 있다.

일단 ①에서 광개토왕의 사망을 ‘宴駕’와 ‘棄國’이란 단어를 조합해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宴駕’는 임금의 죽음을 뜻하는 ‘晏駕’의 잘못이거나 혹은 비슷한 표현이겠다. ‘棄國’은 글자 그대로 ‘나라를 버렸다’는 사망의 뜻이다. 일단 ‘宴駕’라고만 표현하여도 사망 사실이 충분히 전달될 터인데도 굳이 그렇게 덧붙여 나타낸 것은 바로 앞의 부분에 열거된 업적인 ‘(상략)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豐熟’과 직결시키

기 위한 것일 듯 싶다. 광개토왕의 사망이 국왕이란 개인 생명체의 단순한 죽음을 뛰어넘어 고구려의 국가적 차원과 연관된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낸 紘法으로 보인다. 광개토왕의 죽음을 고구려의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한 장수왕의 생각이 강하게 스며들어간 표현이라 풀이된다.

그런데 광개토왕이 죽은 연월일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던 점은 비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비문에 父나 祖父 등 광개토왕의 직계 조상이 보이지 않는 사실과 함께 비의 성격을 단순히 陵碑라고 규정짓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정적 사항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비문이 광개토왕의 사망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대신 주목되는 것은 '以'로 시작하는 종속 문장에 보이는 연월일이다. 앞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핵심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갑인년 9월 29일이란 연월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비를 세운 날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문장 구성상이는 비를 세운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山陵, 즉 광개토왕의 무덤을 완성해서 시신을 그 쪽으로 옮긴 때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었을 따름이다. 이로 보면 비문에서는 산릉으로 옮긴 사실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그에 초점을 맞추었음이 분명하다.

사망 후 한 동안 광개토왕 시신의 향방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 빈소를 따로 마련하여 거기에 안치해 두었다가 갑인년 9월 29일에 이르러서 무덤에 매장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신을 산릉으로 옮겼다는 것은 그 직전에 무덤 조성 작업을 일단 마무리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통해 고구려의 장례 절차의 대강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장례 절차는 적어도 두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었음이 분명하다. 먼저 殯殿을 설치해 시신을 거기에 안치해 두고 일정한 기간 제사를 지내는 단계, 그 기간 동안에는 무덤을 만들고 완성함으로써 시신을 그곳으로 옮겨 마무리하는 다음의 단계이다. 각각의 진행 과정에서 殯斂의례나 葬送의례를 치렀다고 유추해낼 수가 있다. 두 기간 사이가 얼마였던지는 비문상에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隋書』나 『北史』 高句麗傳에는 사람이 죽으면 실내에서 빈소를 두고 3년이 지난 뒤 길일(吉日)을 선택하여 장사를 치른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단 그를 이해하는 데 크게 참고가 된다. 다만, 이 3년상은 꼭 滿3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듯하다. 유교식의 喪葬禮가 확립된 중국이나 武寧王陵誌石의 출토로 명백해진 백제의 사례를 참고하면 3년상은 대체로 27개월이었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小獸林王(371-384) 이후 율령 반포를 기화로 유교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한 고구려도 사정이 비슷하였다고 상정해도 크게 무리하지는 않을 듯 싶다. 실제로 광개토왕의 사망 시점이 412년임은 일단 그를 방증해 준다.

다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광개토왕의 사망 시점을 413년 10월로 기록하고 있음은 그런 추측을 빗나가게 하는 요소이어서 약간 혼란스럽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년을 광개토왕비와 대조할 때 1년의 차이가 벌어짐은 이미 밝혀져 있는 바와 같다. 이에 의거해 역시 광개토왕의 사망 연도를 조정하면 412년이 되므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 그래도 광개토왕의 실제 사망 시점은 그대로 412년 10월이므로 매장하기까지는 만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전히 3년상의 문제는 말끔하게 정돈되지 못하는 한계가 뒤따른다. 이로 이루어볼 때 당시에는 아직 27개월인 3년상의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거

나 아니면 고구려본기의 10월이란 기록에 어떤 문제점이 내재되었을 가능성 둘 중의 어느 쪽이라 보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적이 곤란한 실정이다.

다만, 앞서 일체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참 지난 뒤 작성된 것은 분명하지만 3년상의 내용이 어디까지였을까를 고려하면 약간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다. 어쩌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412년(수정연대) 10월의 사망한 시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3년상을 27개월이라고 환산한다면 계산상 415년 1월 무렵이 될 여지도 있다. 말하자면 3년상은 시신을 이장한 뒤 능묘를 완성하고 묘전의례도 모두 치루고 뒤이어서 진행된 일체의 追善의례까지 끝낸 시기를 포함하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된다. 그럴 때 414년 9월 29일이란 신위를 모신 廟로부터 시신을 안치하는 墓로 이장한 한정된 시점만을 가리키고 이후 계속 진행된 일체의 장의 행위 기간을 포함하면 3년상을 상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입비의 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겠다.

이상과 같이 보면 갑인년, 즉 414년 9월 29일은 어디까지나 광개토왕릉의 외형을 모두 완성하고 난 뒤 시신을 옮긴 날을 명시적으로 기록한 시점이다. 비문상에서는 사망 연월일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문은 사망이 아니라 산릉으로 이장한 사실 자체에 초점을 두고서 이를 매우 중시하는 입장에서 작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후 진행된 墓前의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준다.

그런데 ㉠에서는 산릉으로 옮긴 일을 모두 마치고 난 뒤 입비하고서 광개토왕의 흔적을 기록함으로써 후세에 드러내어 보이려 한 사실이 보인다. 이에 따르면 입비의 시점은 적어도 산릉으로 옮기고 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었음이 확실하다. 무덤을 조성하는 사정이나 시신을 옮긴 과정 및 그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414년 9월 29일은 산릉을 모두 완성하고서 묘전 장송의례를 전부 마친 시점을 가리킨다. 장례와 관련한 절차 일체를 모두 끝낸 뒤에서야 비를 세울 수 있었음은 의심할 바 없으므로 그 날을 결코 입비의 날로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엄밀히 말한다면 이 날은 어디까지나 입비가 가능한 최고의 상한 시점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입비는 그 이후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일이라 설정함이 순조롭겠다. 기왕에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히 시신을 옮긴 날을 입비의 시점으로 간주하는 잘못을 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입비 시점은 달리 추구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비문 자체만을 근거로 삼아서 입비의 시점을 더 이상 정확하게 꼬집어낼 길이 없다. 그렇다면 입비의 시점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 추적해야겠다. 앞서 비문을 통해 적어도 2단계의 장례 절차를 상정하였지만 이는 사망하고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기까지의 과정에 국한된 일이다. 일반적으로는 빈림, 장송 및 매장 완료한 뒤의 墓前의례까지 3단계가 기본적 장송의례로서 진행되었다.⁶⁾ 이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다시 여러 追善의례가 추가되었다. 고구려의 경우에도 정식의 장송 절차 이외에도 陪塚을 비롯한 祭臺 설치 및 樹木 심기, 守墓人 배정 등의 단계를 따로 거쳤다고 한다.⁷⁾ 비의 건립도 그런 추선 작업의 일환으

6) 권오영, 2000, 「한국 고대의 喪葬儀禮」, 『韓國古代史研究』 20.

7)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로서 당연히 상정할 수 있겠지만 무덤을 치장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보다도 그것조차 모두 끝난 뒤 최후의 대단원으로서 입비 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봄이 순리일 듯 싶다. 비문 자체에 수요가 주요 내용으로 실려 있음은 그를 뚜렷이 증명해 주는 사실이다. 무덤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수요인과 관련된 내용이 먼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순리에 어긋난다.

여하튼 이로 보면 매장 이전은 물론이고 매장한 직후 및 그 뒤 장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장의 절차를 거쳤음을 비문을 통해 추리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守墓와 관련한 내용까지 실려 있는 입비 행위는 장의 관련 일체를 마무리한 뒤 최후의 정리 작업으로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여도 무방하겠다. 그러므로 입비의 시점은 414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한참 지난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마땅하다. 그것은 입비 과정 자체를 통해서도 입증되는 사실이다.⁸⁾

2. 입비 시점

비문을 작성하고 비를 세우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시신을 옮긴 뒤 수요인을 확정하며 무덤 조영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도 마무리한 뒤 비로소 비문 찬자나 서자의 선정 및 비문에 들어갈 내용을 비롯한 문장 작성과 관련한 사항, 비석에 사용될 재료를 구하며 옮기고 새기는 행위, 입비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터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덤 조성 및 입비 행위 일체를 하나로 묶어 너무나도 쉽사리 단정해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시신을 옮겨 무덤을 완성한 날을 곧바로 입비의 시점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입비의 시점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대상은 1946년 경주의 壺衿塚에서 출토된 청동제의 壺衿란 그릇이다. 그 밑바닥에는 다음과 같은 십여 자에 달하는 흥미로운 명문이 보이기 때문이다.

B)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衿十

이 명문은 5세기에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物證으로서 크게 주목을 받아왔거나 서체가 광개토왕비와 동일한 점이 각별히 주목된다. 당시 그런 서체가 널리 유행한 데서 말미암은 것인지 혹은 書者가 동일한 데서 비롯된 것인지는 가늠하기가 곤란한 일이지만 일단 양자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임을 추정 가능하게 하는 근거의 하나이다. 첫머리에 乙卯라는 간지를 통해서도 그 점은 증명된다.

이 을묘가 서체는 물론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로 미루어볼 때 415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

8) 비슷한 모습은 德興里壁畫古墳의 주인공인 幽州刺史 鎮의 묘지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도 진의 사망 시점의 나이만 77세라 하였을 뿐이며 묵서 묘지에 제시된 영락 18년(408) 이하 구체적으로 제시된 연월일은 무덤을 만들고 시신을 옮긴 바로 그 시점이다. 이 점은 바로 얼마 뒤인 광개토왕비 작성을 생각하는 데 참고가 된다. 한편 백제 武寧王陵 지석에서는 사망 시점과 함께 무덤에 이상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武寧王의 王妃 지석의 경우에는 사망한 年月만 보이고 정작 年月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改葬還大墓라고 한 매장의 시점이다.

이다. 이를 1주갑 즉 60년 내려서 475년, 혹은 535년으로 보는 견해가⁹⁾ 있기도 하지만 이는 명문 자체의 내용은 물론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등 당시의 제반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단지 호우총 관련 고분의 편년이란 고고학적 해석에 입각한 것일 뿐이므로 방법론상 명백한 잘못이다. 억지로 만들어낸 호우총의 연대관에다 억지로 끼워 맞추어서 명문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명문을 기준으로 해서 호우총의 절대연대를 설정함이 오히려 올바른 접근이기 때문이다. 물론 415년은 어디까지나 호우총 조영의 절대 연대 상한을 가리키는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호우가 만들어진 시점이 415년이란 사실은 눈길을 끈다. 415년은 무덤을 완성한 바로 이듬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비 연대를 무조건 414년이라 설정한 바탕 위에 그 일주년(忌日)을 기념하여 만든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를 기준으로 1주년, 1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그리 만족스런 추정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국왕이라도 이장(移葬) 1주년을 지나 그를 기리기 위해 기념품으로 제작해 널리 배포한다는 것은 달리 유례가 없어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비 자체를 414년으로 설정한 데에 기반하여 거꾸로 추산해 내려진 결론에 불과하다. 차라리 광개토왕비가 세워지던 바로 그 해에 동시에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봄이 어떨까 싶다. 광개토왕의 흔적을 기리고 과시하기 위해 비를 세우면서 함께 기념하는 물품으로 제작해 배포하였다고 해석함이 한결 순조롭지 않을까 싶다. 달리 말하면 415년은 광개토왕비를 세우면서 동시에 옮기기 쉬운 기념품을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그 흔적을 널리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었을까 한다.

청동제 호우의 위쪽이 아닌 밑바닥에 글자를 새긴 것은 이를 놓고 觀賞하는 용도라기보다는 멀리까지 움직임을 예상하고서 만들었음을 암시한다. 그런 뜻에서 호우는 널리 배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한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호우에는 #와 +이라는 두 개의 분명하지 않은 부호 혹은 글자가 보여 흥미를 끈 바가 있는데, 특히 +이 열 번째의 것임을 가리키는 것인지 어떤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것이 다수 제작되어 유포되었을 공산이 크다. 그것이 여럿을 함께 만들 수 있는 鑄造 물품이라는 데서 특히 그러하다. 비문과 함께 제작된 사실을 고려하여 대상을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비문에 그려진 흔적이 대체로 국내의 용도라고 한다면 ‘광개토지호태왕’이란 새로운 시호를 새긴 호우는 널리 그 威武가 직접 미치고 있는 四海 즉 고구려의 천하 전체 지역인 소위 ‘廣開土地’에까지 과시하려는 용도로 제작한 것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그를 받았던 주요한 대상은 곧 비문에서 屬民으로 설정된 지역이었을 것 같다. 비문의 속민으로 인식된 신라에서 출토된 사실에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이다.

요컨대 광개토왕비와 호우는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서 안팎으로 그 업적이 천하 사방에 온통 퍼져나가 영속되기를 염원한 데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이를 장수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지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리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그를 이은 자신이 천하 사방을 직접 굳게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앞서 광개토왕이 ‘棄國’함으로 말미암아 실현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은 장수왕 자신이 앞으로 철저히 실천해

9) 국립중앙박물관, 2006, 『호우총 은령총(발굴 60주년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김창호, 「蓋孱塚에서 출토된 호우 명문과 호우총의 연대에 대하여」, 『科技考古研究』 13, 2007.

나가겠다는 다짐이고 선언이었다. 그 구체저구 내용이 바로 광개토왕의 바람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내용을 담고 있는 ‘(상략)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豐熟’이었다. 그런 점에서 비의 건립이나 호우의 제작은 곧 광개토왕시대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장수왕 자신의 시대가 출범함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고 풀이된다. 광개토왕비문을 장수왕의 입장에서 읽어내어야 하는 근거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

III. 장수왕의 입장과 의지

이처럼 광개토왕비는 장수왕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비로서 그 속에는 장차 제시된 내용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지향을 내재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추정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비문의 두 단락 가운데 둘째 단락의 銘辭 부분이다.¹⁰⁾ 거기에는 장수왕이 강한 의지나 앞으로 추진할 정책의 방향이 담겨져 있으므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國罌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教言 祖王先王但教取遠近舊民守墓洒掃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令備洒掃 ㉠-a 言教如此 是以教令取韓穢 二百廿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國烟卅看烟三百都合三百卅家 ㉠-b 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戶差錯 唯國罌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 墓上立碑銘其煙戶不令差錯 ㉠又制 守墓人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4면 5행에서 9행)

이 구절은 광개토왕비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근자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이른바 守墓烟戶條이다. 광개토왕비의 성격을 수묘비라고 일컬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사실 비문 전체를 두 단락으로 이해하면 그 둘째 단락에 해당하는 뒤의 銘辭 부분은 다시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나뉜다. 앞서 소개한 A)의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에서 드러나듯이 그 이하 전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본다면 사실상 비를 세운 목적은 훈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확실하다. 그 훈적은 문장 구조상으로 보아 다시 두 내용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난다. 하나는 武勳이며, 다른 하나는 그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던 수묘제로서 바로 위의 기사이다.

무훈은 광개토왕 일대를 통해 활발하게 추진된 정복 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광개토왕에게 사후 그런 시호가 부여된 것도 이 무훈을 크게 의식한 것이었다. 거기에 실린 내용이 당대에 치룬 전투의 전부이나 아니면 일부분이나를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지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10) 일반적으로 墓誌는 誌와 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비중은 후자에 두어지고 있다. 형식상으로 보면 광개토왕비문도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대비할 때 後燕 방면 전투가 전부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실을 기술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¹¹⁾ 오로지 戰勝한 사실만을 선택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그 가운데 유독 백제 방면에 비중이 크게 쏠리고 있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볼 대상이다. 이는 후술하듯이 광개토왕 사후 守墓를 전부 자신이 확보한 韓穢(濊) 종족으로 충당하라는 유언을 남긴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 싶다. 무훈과 수묘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비문은 단순히 광개토왕의 무훈만을 강조해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 가운데 수묘와 연관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것이 외정과 내치가 표리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방향에서 정리한 것이었다. 따라서 광개토왕비는 무덤 조성을 전부 완료한 뒤 세운 훈적 비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무훈과 수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함이 적당한 이해라 하겠다.

그런데 수묘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위의 기사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거기에 장수왕의 뜻이 강하게 깃들여 있다는 점이다. 기실 비문 전체가 광개토왕과 관련된 일이지는 하지만 실상은 그의 본래 의지와는 달리 장수왕의 의도가 깊숙이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둘째 단락의 전반부인 무훈 기사도 마찬가지로 풀이된다. 물론 그것을 수묘와 연관시키면 당연히 광개토왕의 뜻과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을 터이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장수왕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었던 내용이다. 그에 견주면 수묘인과 관련한 부분만은 약간 다른 면모를 보인다. 여기에는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의지가 함께 들어가서 미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점은 C)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뚜렷이 드러난다.

사료 C)는 내용상 다시 크게 세 개의 작은 문단으로 구분된다. ㉠은 광개토왕 생존 시의 敎言(遺言)을 직접화법으로 옮겨 적은 내용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광개토왕의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셈이다. 자신이 재위할 때까지는 전통적 관습에 따라 원근의 舊民만을 수묘에 충당하였으나 이제 구민이 열악해져 먼 훗날까지를 기약할 수가 없게 된 마당이었으므로 차후는 새로운 新來韓穢, 즉 전부 신민으로 교체해서 개편하라는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수묘가 열악(羸劣)한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단지 그 개편의 방안만이 제시되어 있을 따름이다.

㉡은 그와는 달리 장수왕이 광개토왕의 교언을 받아들여 실행으로 옮긴 내용이다. 다만, 거기에는 광개토왕의 뜻이 반영되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장수왕이 내용을 수정해서 집행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실제로는 새로운 수묘제 실행이 장수왕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수묘제의 전반적 정비는 광개토왕의 유언을 계기로 시작한 것이기는 하나 장수왕이 장례 절차 일체를 마무리 하면서 당시의 현실 상황을 고려해 나름대로 고쳐서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은 制의 내용이다. 이 制는 내용상 국왕의 단순한 일시적 지시나 명령을 뛰어넘어 그를 매개로 해서 법제화된 법령의 구체적 條文이다. 작성 시점이 광개토왕비와 차이가 나는 집안비에도 용어상의 약간出入이 있기는 하나 거의 유사한 내용이 보임은 그를 방증해 주기에 충분하다. 이 制를 발령한 주체가 장수왕인지 광개토왕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모습으로¹²⁾ 처리된 사실도 그를 방증한다. 광개토왕대에

11) 朱甫墩, 2006, 「高句麗 南進의 性格과 그 影響 -廣開土王 南征의 實相과 그 意義-」, 『大丘史學』 82.

12) ㉢에서 '自今以後라 하여 특정 시점이 보이지만 이는 교령을 반포한 시점일 수도 있고 비문을 작성한 현시점일 수도 있으며

이미 그런 내용이 敎諭의 형태로 공포되었고 이어서 율령의 한 조문으로 정착한 것인지 아니면 장수왕이 광개토왕의 교령을 이어받아 율령 조항으로 완전하게 정리해 넣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의 연장선상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오히려 후자 쪽이 적절한 듯 싶다. 광개토왕의 의지나 생각과 장수왕의 그것이 일치해 그대로 이어서 시행되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보면 비문의 수묘제에는 광개토왕의 생각이 당연히 들어간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장수왕의 강력한 의지에 입각한 것이었다.¹³⁾ 그런 측면에서 그와 직결된 무훈도 장수왕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 해야 하겠다. 광개토왕 당대에 치른 전투 가운데 특별히 한예와 관련 있는 백제와의 전투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무훈의 대상이 된 지역이 수묘인 차출 지역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은 그를 방증해 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예가 아닌 대상이 일부 보인다고 해서 그를 쉬이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양자가 완전하게 합치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새로이 검토해 보아야 할 대상이지 전체를 마냥 부정할 일은 아니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광개토왕비는 수묘제에 상당한 무게를 둔 성격의 비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개토왕이 수묘제 정비에 깊은 관심을 처음 보였던 것은 그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서가 아니라 이미 생존해 있을 당시였다. 그것은 위의 사료C) 속에 드러나 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특히 ㉠-b가 주목해 볼 대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광개토왕이 당대에 수묘제를 어떻게 정리하였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그리 선명하지가 않다. 과연 광개토왕 자신은 수묘제를 어떻게 정비하려고 시도하였을까.

C)에는 수묘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광개토왕에 앞서 그 祖王, 先王(祖先王)¹⁴⁾들은 원근의 舊民들을 차출해 수묘를 담당케 하였다. 그러다가 자신의 父王인 故國壤王의 장례를 치르고 수묘인을 차출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에 빠진 점을 확인하고 기존의 체제로는 더 이상 장례를 보장하기 어렵겠다고 절감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된 직접적 요인이 매매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그처럼 수묘인 매매가 일어나게 된 것은 差錯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b에 의하면 광개토왕은 다시는 그런 차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祖先王의 능묘에다 처음으로 비를 세우고 연호들을 새기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보면 일단 광개토왕이 시행한 일이란 수묘와 관련해 기존 구민 대상으로 한 수묘제를 재정리함으로써 더 이상은 차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를 세우도록 해서 관리한 일이었다.¹⁵⁾ 말하자면 일단 구민 중심으로 정리하고 차착 방지를 위해서 처음으로 입비한 조치였다.

로 어느 왕인지 불분명하다.

13) 김현숙, 앞의 논문.

14) 같은 비문 내에서 양자를 함께 사용하므로 동일하였음은 분명하다. 다만, 先王을 따로 구분하려는 것은 유난히 눈에 띄는 점이다. 광개토왕에게 선왕, 즉 아버지는 故國壤王이다. 고국양왕이 유독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겠으나 광개토왕의 수묘제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은 그 왕릉을 조영할 때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굳이 효심에서 선왕을 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정황은 다시 장수왕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어졌다.

15) 이성시, 앞의 논문.

이상과 같이 보면 집안비는 일단 광개토왕의 수묘제 정비 과정에서 세워진 것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는 편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할 듯 싶다. 집안비의 8행에는 ‘(상략)立碑銘其烟戶頭什人名’이라 하여 비를 세운 사실 자체와¹⁶⁾ 함께 20명의 호두를 기록한 사실까지 확인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호두의 명부는 그 뒷면에 작성되어 있었던 듯하다. 따라서 광개토왕의 수묘제 정비는 기존 구민으로 편성된 20호를 하나의 기본 단위로 편제한 연호제를 정비하고 이들이 차착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름을 명기한 비를 세운 일이었다. 그에 견주면 장수왕은 후술하듯이 가히 개혁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의 수묘제 체계 전반을 새롭게 재정비하였다.

사실 광개토왕은 재위 중에 자신이 공취한 ‘신래한예’로서 수묘제를 개편하기 바라는 의견을 사망하기에 앞서 장수왕에게 피력하였다. 수묘연의 대상은 ①의 ‘取吾躬巡所略來韓穢’에서 드러나듯이 자신이 재위할 때 행한 전투에서 확보해 왕도로 ‘略來’해둔 한예들이었다. 광개토왕은 정복전을 치르면서 확보한 포로들을 왕도에다 사민시켜 새로운 수묘제 시행을 위한 대책을 벌써부터 마련하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광개토왕은 장수왕을 태자로 책봉한 이후 평소 그를 주지시켰거나, 혹은 임종에 직면해 자신에 데려온 신래한예를 중심으로 수묘제를 정비하도록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다. 다만, 광개토왕은 구민을 아예 신래의 한예로 모두 바꾸되 기존의 관례처럼 20호를 하나의 단위로 삼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집안비는 물론 광개토왕비 자체에서도 뚜렷이 드러나는 사실이다.

그런데 장수왕은 한예를 주된 대상으로 삼도록 한 광개토왕의 지시는 일단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수묘의 구성과 조직을 한결 더 보강하는 나름의 몇몇 조치를 감행하였다. 먼저 20호에 10호씩을 덧붙여 하나의 단위를 30호로 편제하였던 것이다. 이는 당연히 장수왕 자신의 판단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慮不知法則’이라 하여 수묘인들이 장차 운영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빚어질 만약의 사태를 우려한 데서 나온 발상이었다. 광개토왕의 기본 기획안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간 보완적 시도였다. 장수왕이 새로운 수묘제를 실시하면서 크게 염두에 둔 것은 광개토왕이 염려한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였다. 장수왕은 광개토왕의 당부를 충실히 받아들여 이행하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수묘제의 철저한 조직화를 도모한 것이었다.

장수왕이 광개토왕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간 것은 수묘를 국연과 간연으로 나눈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집안비에는 수묘 연호에 대한 아무런 구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광개토왕비에는 수묘 연호를 크게 國烟과 看烟의 두 등급으로 나누었다. 아마도 이는 20호를 하나의 단위로 하였다가 구민 10호를 더하면서 착상한 장수왕의 創案으로 보인다. 수묘 연호 전체를 하나의 등급으로만 설정하지 않고 위계화를 도모한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간 역할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체계화를 위한 조치였다. 이는 전적으로 장수왕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수묘인의 출신 지역을 광개토왕비에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들을 지방통치와도 연결시키기 위한 의도에서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도 운영해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를 보완해나갈 대비

16) 그 비가 바로 집안비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책 마련도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광개토왕비문에는 그들의 구체적 출신 지역을 銘記해 둠으로써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이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일어날지 모를 차착의 사태를 겨냥한 조치였다. 결원이 생긴다면 그들 원래의 출신 지역을 대상으로 계속 동일하게 부담을 지우려는 생각이었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왕의 의도를 충실히 실천하면서도 오히려 더욱 더 보장하는 입장에서 수묘제의 정비를 실시한 셈이었다. 광개토왕이 염려하였던 것처럼 그야말로 대로 만년 뒤에까지를 예비한 조직화·체계화였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규모의 비를 세워서 그를 드러내고 동시에 호우를 만들어 속민들에게까지 배포한 것은 곧 자신의 강력한 실행 의지를 나타내어 보이기 의도에서였다. 그것이 곧 단순한 수묘제의 운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광개토왕이 이룩한 업적이 遺志를 이어받아 武威가 영원히 천하에 떨쳐지고 백성이 풍요롭고 國富民殷하며, 오곡이 언제나 풍성한 고구려 국가를 유지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광개토왕비를 세우는 등의 추선의례를 집행하면서 그런 뜻을 천하 안팎으로 내세워 결의를 다짐하는 場으로 활용하였다.

장수왕이 시호제를 바꾼 점도 수묘제의 대대적 개혁과 관련해 주목해볼 대상이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에서는 시호를 국왕의 葬地를 근거로 제작함이 일반적이었다.¹⁷⁾ 이는 시신이 묻힌 장소를 중시한 시호법이다. 장수왕은 그런 기존 시호 부여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 배경을 분명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비슷한 시호가 매우 많아짐으로써 ‘萬年之後’를 염두에 둔다면 혼동으로 말미암아 무덤 자체는 물론 수묘인들의 차착이 일어나 혼선이 크게 빚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고구려 국가의 중심 묘역인 ‘國岡’만 하더라도 바로 인접한 곳에 너무 많은 왕릉이 조성된 상태였다. 따라서 시호 자체도 명확하게 구별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다다랐던 것이다. 그래서 국왕의 업적이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식의 시호제가 필요하였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도 받아들이면서 보완하는 일종의 절충적이며 과도기적 방식을 채택한 것이었다. 앞서 수묘제의 시행 방식과 아울러서 그런 측면을 살펴보면 장수왕은 과감하고 급진적 성향이러기보다는 차라리 온건 합리적이며 철저히 실천하는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느낌이 짙다. 그가 추진한 기본 정책은 곧 광개토왕이 확보한 영토를 지켜 고구려를 영원히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豐熟’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 의지를 굳게 다짐하고 실현해 옮기려는 각오와 다짐을 만방에 드러내려고 생각한 것이 곧 광개토왕비의 건립과 호우의 제작이었다고 하겠다.

17) 고구려의 시호제에 대해서는 임기환, 2002, 「고구려 王號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8 참조.

IV. 장수왕의 治績과 向方

장수왕은 광개토왕이 이루어낸 업적을 착실히 이어가면서 내실을 굳게 다지는 방향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북중국에서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던 왕조 교체를 목격하면서 장수왕은 創業보다 守成의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익히 보면서 느끼고 있었던 차였다. 그래서 고구려 왕조를 단단히 수성해 영속시켜 갈 수 있도록 온갖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그럴 목적으로 일대에 걸쳐 줄곧 內治에 신경을 크게 기울이는 한편 국제정세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외교적 역량도 유감없이 발휘해 갔다.

아버지 광개토왕비의 건립은 곧 장수왕 자신의 치세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후 장수왕은 무려 79년 동안이나 재위하였다. 이처럼 장기간의 재위는 그야말로 비문에서 선언하고 명시한 내용을 실현에 옮겨 고구려의 지배체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427년 유구한 역사도시 平壤으로의 성공적 천도,¹⁸⁾ 이후 高麗로의 국호 개정 등은¹⁹⁾ 그런 실상을 반영해주기에 적절한 實例들이다. 475년의 백제의 왕도 漢城 공략과 영역의 확장, 국제동향의 정확한 파악, 특히 南朝를 적절히 활용한 강적 北魏 대상의 견제 외교 등은 장기간 재위한 장수왕의 노련한 정치적 수완과 역량을 읽어내기에 충분한 증거들이다. 이들을 근거로 삼을 때 장수왕대는 일단 고구려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한 시기라 평가하여도 좋겠다.

이처럼 장기간 재위하면서 장수왕은 엄청난 업적을 일구어내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그 사후에 예기치 못한 문제를 불러오는 遠因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를 뒤이은 손자 文咨王대(492-519)는 아니지만 바로 직후에 왕실 내부에 분란이 발생하면서 지배체제가 무너지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장수왕 재위 당시부터 그럴 만한 조짐은 이미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약가늠이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1926년 경주에서 뒷날 瑞鳳塚이라고 명명된 적석목곽분이 발굴되었는데, 그로부터 크게 눈여겨볼 만한 부장품 하나가 출토되었다. 십자 모양으로 서로 교차하는 손잡이가 달린 뚜껑과 본체로 이루어진 銀盒이었다. 은합의 안쪽과 바닥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D) ①延壽元年太歲在辛三月中太王教造合杆三斤(바닥)

②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太王教造合杆三斤六兩(안쪽)

본체의 바닥과 뚜껑의 안쪽에 각기 새겨진 두 명문은 양자를 합쳐야만 비로소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성립된다. 간지인 '辛卯'를 '辛'과 '卯'로 따로 나누어 사용한 특이한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그 점을 제

18) 徐永大, 1981,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韓國文化』 2 참조.

19) 金鎮熙, 1989, 「高句麗國號表記의 變遷에 關한 考察」(嶺南大 教育大學院碩士學位論文); 鄭求福, 1992, 「高句麗의 '高麗' 國號에 대한 一考」, 『湖西史學』 19·20.

외하면 두 명문의 내용상 차이라고는 오직 무게가 다르다는 점뿐이다. 그렇게 두 명문을 합쳐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되도록 구상한 데에는 和음을 위한 어떤 의도가 깔린 듯하나 그 실상은 잘 알 수 없다.

위의 명문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대상은 延壽란 연호이다. 일단 연수의 소속이나 시점을 판별할 수 있게 하는 주된 실마리는 太王이란 왕호이다. 태왕은 고구려는 물론 신라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양자는 시작 시점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인다. 광개토왕비문을 근거로 하면 고구려의 경우 4세기부터임이 확실시되나, 신라에서는 蔚山(蔚州)川前里書石 명문에 의하면 法興王대(514-540), 특히 재위 후반기인 530년대 무렵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이때는 신라에서 서봉총과 같은 적석목곽분의 조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으므로 이 은합 명문의 태왕을 그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게다가 당시에는 아직 신라에서 독자적 연호가 사용되기 이전의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연수가 신라의 연호일 수는 결코 없는 일이겠다. 그렇다면 태왕의 사용으로 볼 때 이 연호는 고구려의 연호로 봄이 올바른 판단이다. 그릇의 모양이나 ‘柁’란 용어도 그를 방증해 주는 사실이다. 백제에서 태왕이란 용어의 사용 시점 여하는 잘 모르겠으나 5세기 이후 연호를 사용한 적은 없었으므로 선정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이처럼 태왕이란 왕호로 볼 때 은합의 연수 연호는 고구려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구려에서 제작된 물품이 신라 분묘에서 출토되는 사실이 약간 의아스럽지만 장수왕이 광개토왕을 기리기 위해 만든 호우와 마찬가지로 5세기의 일정 기간 동안 고구려와 신라 두 나라 사이에는 긴밀한 우호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그런 실상을 방증하기에 충분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연수를 고구려의 연호라 하여도 하등 이상스럽지가 않은 것이다.

연수가 고구려의 연호라면 구체적 시점이 언제이냐가 문제로 부상된다. 그를 풀어가는 실마리는 일단 ‘辛卯’란 年干支이다. 적석목곽분의 조영 기간 및 연호 사용의 시점, 그리고 신라와 고구려 두 나라의 관계를 아울러서 고려하면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일단 391년, 451년, 511년 셋을 상정할 수 있다.²⁰⁾ 이 가운데 511년은 서봉총의 조영 연대가 그만큼 뒤떨어진다는 특정한 적석목곽분 編年觀을 근거로 해서 막연하게 제기된 것이지만, 이는 방법론상으로도 물론 부적절하거나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6세기 초 당시 신라는 고구려와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에서 태왕의 지시로 제작된 은합과 같은 귀족품이 정상적 외교루트를 거쳐 신라로 유입되기는 너무나 곤란한 상황이었다.

단순히 두 나라의 관계만을 놓고 볼 때 391년에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²¹⁾ 그러나 서봉총의 조영 연대를 함께 고려하면 이는 너무도 이른 시기 설정이다. 게다가 이해는 바로 광개토왕의 즉위년으로서 永樂 원년에 해당하므로 결코 연수 원년이 될 수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신묘년으로서 연수 연월에 해당하는 시점은 달리 찾아져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고구려와 신라 두 나라의 관계나 서봉총

20)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pp.144-145에서 서봉총의 편년관을 기준으로 해서 은합이 신라에로의 유입·부장의 과정을 고려해 331년으로 추정하였으나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다.

21)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일지사.

의 조영 연대를 아울러서 고려하면 연수 원년의 신묘년은 451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²²⁾ 그럴 때 은합의 태왕은 저절로 장수왕이 되며 연수는 그가 사용한 연호 가운데 하나로 손꼽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연표를 근거로 삼아 신묘년이 고구려 국왕의 즉위년이 아니면서 새로운 연호 사용의 원년으로 설정해도 아무런 무리한 점을 보이지 않는 대상은 오직 장수왕 뿐이다. 서봉총의 축조 연대는 곧 이 은합을 상한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신라 적석목곽분의 편년 설정에 주요한 기준점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²³⁾

고구려에서 연호가 사용된 시점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일단 광개토왕 일대에는 永樂이 있었으므로 이를 下限으로 하는 셈이다. 광개토왕이 스스로 영락대왕이라 부른 것으로 보아 전체 재위 기간에 그를 사용하였음은 거의 확실하다. 장수왕도 즉위하자마자 즉시, 혹은 얼마의 시간이 경과한 뒤(3년의 장례 기간이 끝난 뒤) 새 연호를 사용하였을 터이지만 문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금석문 상에서는 고구려의 것으로 추정되는 延嘉, 永康, 景, 建興 등과 같은 몇몇 연호가 보이지만²⁴⁾ 모두 그 시점 설정이 그리 명확하지가 않다.

서봉총 은합의 제작 연대가 451년이라고 할 때 각별히 주목해 볼 사항은 그 해가 연수 원년에 해당하는 점, 그것이 문자 그대로 수명을 ‘늘린다’, 혹은 ‘오래되다’는 뜻을 가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1세 1연호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었으며 그럴 때 어떤 念願을 담은 연호를 선정하였다고 풀이된다.²⁵⁾ 연호를 처음 창안해 사용한 漢武帝도 그런 의도 아래 여러 차례 연호를 개정하였으며, 唐高宗이나 則天武后대에는 1년 사이에도 몇 차례나 고쳐 재위 기간 전체에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잦았다. 신라의 眞興王대(540-576)만 하더라도 재위 37년 동안 4개의 연호를 사용하였다.²⁶⁾ 따라서 무려 79년간 재위한 장수왕 당대에 여러 개의 연호 사용이 있었다고 상정해도²⁷⁾ 하등 이상스러울 바가 없다. 재위 기간이 유난히 길어 어떤 계기나 명분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刷新策으로서 연호를 종종 바꾸기도 하였을 터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주목해볼 대상은 연수에 내포된 뜻이다. 그 속에는 수명과 연관되는 어떤 바람이 강하게 담겨져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연수가 그 자체로서 수명과 깊이 연관된 것임은 확실하다. 그와 같은 뜻을 가진 연호가 왜 하필 451년이란 시점에서 사용되었을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필요가

22) 金昌鎬, 1985, 「古新羅 瑞鳳冢의 年代 問題(I)」, 『伽耶通信』 제13·14; 이희준, 1995, 「경주 皇南大塚의 연대」, 『嶺南考古學』 17.
 23) 적석목곽분의 편년을 기준으로 서봉총의 연대를 설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접근방법이 아니다. 간혹 신라고고학에서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다만, 은합은 입수해서 埋納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어디까지나 축조의 상한을 가리킬 따름이다.
 24) 정운용, 1998,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의 年號」, 『한국사학보』 5.
 25) 정운용, 위의 논문.
 26) 진흥왕 초기에는 어머니 只召부인이 섭정하였으므로 법흥왕의 建元이란 연호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였다. 진흥왕이 親政하면서 사용한 開國부터 헤아린다면 3개가 된다.
 27) 濱田耕策, 2006, 「高句麗長壽王という時代」, 『朝鮮學報』 199·200.

있다.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저절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장수왕의 재위기간 및 연령이다.

장수왕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79년 동안 재위하였고 사망하였을 때의 연령은 98세였다고 한다.²⁸⁾ 장수왕은 광개토왕의 元子로서 재위 18년째에 태자로 책봉되었다.²⁹⁾ 그런데 『삼국사기』의 기년을 광개토왕비문과 대비하면 즉위년이 각각 392년, 391년으로 되어 1년간의 오차가 생겨난다. 일단 이 점은 『삼국사기』 기년에는 약간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하므로 눈여겨볼 사실이다.

그런데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³⁰⁾ 장수왕의 연령이 백여세였다고 한다. 아마도 당시로서는 적어도 백세 쯤이나 되는 유별난 나이였으므로 北魏의 조정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것처럼 특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98세라고 명시된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풀어내기 위해 약간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장수왕이 태자로서 책봉된 시점이다. 광개토왕비에 근거해 연대를 수정하면 이는 408년에 해당한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태자로 책봉하였을까를 고려하면 우선 成年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광개토왕 자신이 바로 그 나이에 즉위한 사실도 참고 되었을 가능성이다. 이런 논리에 입각하면 장수왕의 출생 연대는 391년 아니면 392년이 될 수가 있다. 만약 391년이라면 장수왕은 광개토왕 즉위년인 신묘년에 태어난 셈이 되므로 사망할 시점에는 백세가 넘는다. 392년이라도 기년을 조정한다면 492년에 사망한 장수왕은 백세가 된다.

이런 논리를 따라가면 451년에 은합이 제작된 배경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가능성이 설정된다. 첫째, 장수왕이 391년에 출생하였다면 그 해는 바로 장수왕의 甲年(回甲)이 되는 시점이다.³¹⁾ 그렇다면 은합은 그를 기리는 뜻에서 제작해 유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같은 장수왕대라도 새로운 시기의 시작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신라를 대상으로 삼아 그를 보낸 것도 기존처럼 우호관계를 계속 이어 나가는 뜻에서였겠다. 다른 하나는 만약 그 이듬해가 장수왕의 갑년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희구한다는 뜻을 담아서 은합을 제작·배포하였으리라고 풀이된다.

아직 확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장수왕의 출생 연도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차라리 연호 연수를 근거로 하면 거꾸로 391년의 신묘년이 가장 적절할 듯 싶다. 얼마전 태왕릉에서 출토된 청동방울의 제작 연대도 신묘년이었음이 아울러 참고로 된다. 391년의 신묘년은 고구려로서는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였다. 故國壤王이 사망하고 광개토왕이 즉위한 해였을 뿐만 아니라 수묘제에 대한 개편이 처음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삼국사기』의 기년을 1년씩 조정해 보면³²⁾ 이때 佛法을 崇信하도록 하였고, 처음으로 國社를 세우고 宗廟를 수리하였다.³³⁾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장수왕이 태어나기까지

28) 『三國史記』 18 高句麗本紀 長壽王 79年條.

29) 같은 책, 장수왕 즉위년조.

30) 『魏書』 100, 열전 高句麗.

31) 김창호 앞의 논문(1985) 및 이희준 앞의 논문 참조.

32) 고국양왕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392년에 사망하였지만 기년을 조정하면 391년이 된다. 그렇다면 이 해는 광개토왕의 즉위년이기도 하므로 이때의 일들은 원래 광개토왕의 치적이었으나 고국양왕대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였다면 이 신묘년은 엄청나게 큰 의미를 지닌 한 해가 된다. 광개토왕비의 소위 ‘辛卯年記事’에서처럼 백제 공략의 명분을 굳이 이 해로 잡은 것도 그런 사정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신묘년은 고구려인에게는 뇌리와 기억 속에 특별히 깊이 각인된 해였던 것이다. 설사 장수왕이 출생한 바로 그해가 아니어도 장수왕의 재위 기간에 돌아온 60년 뒤의 신묘년은 기념비적 해로 재생되었고 따라서 은합을 제작·배포하는 명분이 된 것이라 하여도 무방하겠다. 여하튼 광개토왕비를 건립하고, 호우와 은합의 제작한 장수왕은 기념품으로 어떤 일을 과시하는 특이한 행태를 보였다. 이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주는 듯하여 대단히 흥미로우므로 충분히 음미해볼 만한 대상이다.³⁴⁾

장수왕은 오래도록 재위하고 천수를 누리다가 사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자식들은 아무도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였다. 그의 재위 기간에 뒤이어 즉위하게 문자왕은 아버지 古鄒大加 助다가 일찍이 사망해 大孫으로서 궁중에서 길러졌다. 「충주(중원)고구려비」에는 태자로서 兪과 같은 인물이 年老한 장수왕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모습이 간췌된다. 이들도 모두 장수왕의 재위 기간에 사망하였다. 비문에 보이는 태자가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조다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³⁵⁾ 그런 측면에서 장수왕대 다수의 태자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음미해볼 만한 대상이 된다. 이들은 동시에 조다와도 별개의 인물일 여지도 저절로 생겨난다.³⁶⁾ 만일 그렇다면 장수왕이 장기간 재위하는 동안 여러 태자가 선호하면서, 혹은 동시에 존재하였을 터이나 이들 모두가 장수왕에 앞서 사망하였으므로 왕위 승계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어 갔을 것 같다. 장수왕에게는 그밖에도 다수의 다른 자식들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왕위계승권을 지녔을 수가 있는 일이겠다. 그들 모두가 장수왕에 앞서 사망하였는지 어떤 지는 단정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들에게도 각기 자식들이 있었을 공산이 크다. 조다는 물론 공 등도 앞서 사망하였음은 분명하나 이들에게도 자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문자왕을 특별히 大孫이라 부른 것은 그들과 차별짓기 위해서였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보면 장수왕이 사망한 뒤 정당한 왕위 승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났을 것 같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장성한 상태였고 따라서 거기에 그들의 外戚들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갔을 공산이 너무나도 커졌다. 장수왕이 오랜 기간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를 형국이었다. 어린 祖孫의 왕위 승계는 언제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일이었다. 그보다 行列이 앞서는 삼촌들이 존재하면 특히 그러하다. 신라에서도 下代의 실질적 개창자라 할 元聖王(785-799)의 세 아들이 일찍 사망함으로써 부자승계에 실패하고 손자인 昭聖王(799-780)이 즉위하고 이어 그가 일찍 사망하자 아우 3형제가 조카인 哀莊王(800-809)을 시해하면서 왕위쟁탈전이 전개되어간 사정도 장수왕의 사후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데에 크게 참고로 된다.

33) 『三國史記』 18 高句麗本紀 故國壤王 8年條.

34) 어쩌면 청동방울도 장수왕이 451년 신묘년을 기념해 제작하여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묘에 제사한 뒤 그래서 바깥에다가 매납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35) 백제에서 비록 義慈王대의 일기기는 하지만 복수의 태자가 존재하였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36) 그런 측면에서 충주(중원)고구려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볼 여지가 생겨난다.

문지왕의 뒤를 이은 두 아들 安藏王(519-531)과 安原王(531-545)이 잇달아 벌어진 政爭 속에서 사망한 것은 그런 시상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로써 장수왕이 쌓은 지배체제는 그야말로 ‘長壽’함으로써 희망과는 반대로 밑바닥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비상적인 위기 정국을 맞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V. 마무리

한국고대사의 연구자들은 관련 사료가 너무도 빈약한 까닭에 언제나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학수고대한다. 그에 부응이라도 하듯 이따금씩 새로운 자료가 출현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를 크게 진척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그를 다루는 방법과 자세를 점검하면 반성해야 할 측면이 왕왕 발견된다.

자료 자체를 낱낱이 분석해서 철저히 음미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필요한 대상에만 집중함으로써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소홀히 다루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서는 정작 놓치는 정보가 적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한편 새로운 사료에 대해서 기존 선입견에 바탕하거나 아니면 전체적 측면보다는 自說을 보강하려는 방향으로만 살피려는 경향이 짙다는 점이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아무리 흥미로운 새로운 많은 자료가 출현하더라도 논란만 가중될 뿐 사실을 밝혀내는 데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된다. 기왕의 설에 집착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치밀한 논증에 입각한 신중한 해석보다는 영성한 논증으로 커다란 주장을 앞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이므로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이상과 같은 측면은 백여년의 연구 역사를 갖고 있는 광개토왕비에서도 찾아졌으니 짧은 연구 연륜을 가진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말할 나위가 없겠다.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왕에 널리 알려져 다루어진 금석문 자료라도 면밀하게 계속 점검하고 곱씹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투고일: 2016. 5. 5.

심사개시일: 2016. 5. 10.

심사완료일: 2016. 5. 24.

『三國史記』『魏書』

- 장진원,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판독과 연구 현황」, 『木簡과 文字』 11.
-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 국립중앙박물관, 2006, 『호우총 은령총』(발굴 60주년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 권오영, 2000, 「한국 고대의 喪葬儀禮」, 『韓國古代史研究』 20.
- 金鎮熙, 1989, 「高句麗國號表記의 變遷에 關한 考察」(嶺南大 教育大學院碩士學位論文).
- 김창호, 2007, 「壺冢에서 출토된 호우 명문과 호우총의 연대에 대하여」, 『科技考古研究』 13.
- 金昌鎬, 1985, 「古新羅 瑞鳳冢의 年代 問題(Ⅰ)」, 『伽倻通信』 제13·14.
- 金台植, 2012, 「廣開土王碑, 父王의 運柩 앞에서 靑年王이 보낸 경고」, 『韓國古代史探究』 10.
- 金賢淑,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研究』 65.
- 徐永大, 1981,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韓國文化』 2.
- 余昊奎, 2014, 「廣開土王陵碑의 문장구성과 서사구조」, 『嶺南學』 25.
- 이성시, 2008, 「광개토대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韓國古代史研究』 50.
- 이희준, 1995, 「경주 皇南大塚의 연대」, 『嶺南考古學』 17.
- 임기환, 2002, 「고구려 王號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8 참조.
- 鄭求福, 1992, 「高句麗의 ‘高麗’ 國號에 대한 一考」, 『湖西史學』 19·20.
- 정운용, 1998,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의 年號」, 『한국사학보』 5.
-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 朱甫噉, 2010, 「浦項 中城里新羅碑에 대한 研究 展望」, 『韓國古代史研究』 59.
- 朱甫噉, 2006, 「高句麗 南進의 性格과 그 影響 -廣開土王 南征의 實相과 그 意義-」, 『大丘史學』 82.
- 朱甫噉, 2014, 「백제사 관련 신출토 자료의 음미」, 『한국 고대사 연구의 방법과 시각』(노태돈교수 정년기념논총), 사계절.
-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일지사.
- 濱田耕策, 2006, 「高句麗長壽王という時代」, 『朝鮮學報』 199·200.

廣開土王碑と長壽王

朱甫暉

廣開土王碑は高句麗関連文献史料があまり豊かではできなかった失政に比べてそこには比較的多くの分量の情報が含まれていて、多くの研究者たちの注目を集めた。さらに、2012年夏、後日集安高句麗碑(以下、集安碑として略称すること)は廣開土王碑の縮小版と断定しても過言ではないほど、碑文の構造や内容は非常に類似している。しかし、集安碑は、摩耗が非常に激しく、集安碑を保有した中国側が碑文を直接調査しないようにして研究が遅れている。

しかし、廣開土王碑と類似しているという点で研究者たちに新しい視覚を提示したと考えられる。廣開土王碑文の文壇構造を新たに理解してみようとした試みが、まさにそれだ。今までは碑文の内容だけで文壇を区分しようとして無条件3段落から構成されたと断定するのが一般的傾向だった。しかしこれは最初から碑文の作成者が持つ本来の意図は全く配慮しようとしなかったという点が研究上根本的な限界を持ったアクセスである。そのような意味で、廣開土王碑文を大きく2段落に区分した新しい見解は方法上の斬新性で大きく注目し、見ごたえのある対象だといえよう。碑文全体の脈絡を十分に把握するためには原作聖者の立場を何よりも先に念頭におかなければ鑑が一次的な鍵であり、最も基本的な接近方法だ。それでもどうせそんなことができなかった点は今からでも深く熟考すべき部分だ。

▶ キーワード: 廣開土王碑, 集安高句麗碑, 長壽王